

##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제정	2008. 8. 11	조례 제1604호
개정	2009. 11. 9	조례 제1692호
	2010. 3. 26	조례 제1722호
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 11. 7	조례 제2417호
일부개정	2021. 9. 28	조례 제2789호
일부개정	2021. 12. 23	조례 제2818호
일부개정	2022. 8. 2	조례 제2881호
일부개정	2023. 3. 10	조례 제2943호
일부개정	2023. 12. 28	조례 제30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1. 7, 2021. 12. 23, 2023. 3. 10, 2023. 12. 28>

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
2. “지역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, 용역, 자재생산,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.
3. “다른 지역 건설산업체”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, 용역, 자재생산,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.
4. “지역건설노동자”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광명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- ③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,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.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1. 9, 2010. 3. 26, 2018. 11. 7>
-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·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1. 9, 2018. 11. 7, 2023. 12. 28>
-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11. 9, 개정 2018. 11. 7>

제3조의2(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)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,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9. 28]

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, 2022. 8. 2, 2023. 12. 28>

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12. 28>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, 하도급의 적정여부,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정기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3, 2023. 3. 10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정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7, 2021. 12. 23, 2023. 3. 10>

1.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2.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7, 2021. 12. 23, 2023. 3. 10>

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 수시 실태조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3, 개정 2023. 3. 10>

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
2.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
3.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,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업

체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4항에 따른 수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3, 개정 2023. 3. 10>

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30조의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23, 개정 2023. 3. 10>

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1. 7, 2021. 12. 23, 2023. 3. 10>

⑧ 본 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는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. <신설 2021. 12. 23, 개정 2022. 8. 2, 2023. 3. 10>

[제목개정 2023. 3. 10]

제6조(포상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11. 7>

1.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·단체·업체 및 공무원

2.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

③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, 2018. 11. 7>

1.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

2.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공연 초대권 등 지급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

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⑤ 시장은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11. 9, 개정 2018. 11. 7>

[제목개정 2018. 11. 7]

제7조(적용배제)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1.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2.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 된 경우
3.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

제8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1.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2.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
4.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② 협의회 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1.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

2.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3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②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1. 7>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10. 11. 25, 2018. 11. 7>

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, 2018. 11. 7>

1.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

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8. 9, 2018. 7. 31, 2018. 11. 7>

제15조(실무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9]

제16조(지역건설산업 육성) ① 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·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② 회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·용역 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[본조신설 2009. 11. 9]

제16조의2(분할발주 등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9. 28]

제16조의3(공동도급 활성화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, 공동이행방식,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

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9. 28]

제17조(지역건설산업 보호)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7>

[본조신설 2009. 11. 9]

제18조(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)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9]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15조에서 이동 <2009. 11. 9> 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1. 9 조례 제16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3. 26 조례 제172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⑥ 까지 생략

⑥⑦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⑥⑧ 부터 ⑦⑨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7 까지 생략

⑤8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⑤9 부터 ⑦1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11. 7 조례 제24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9. 28 조례 제278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3 조례 제28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8. 2 조례 제288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3. 10 조례 제29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5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